

[2]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불러오기

• 최저한세 적용대상: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000,000원 → **조정후세액 5,400,000원**

구분	코드	②감면후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할	⑤조정후세액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162,000,000			
소득조정금액	(102)의금산입	130,000,000			
	(103)손금산입	100,000,000			
	(104)조정후소득금액(101+102-103)	192,000,000	192,000,000		192,000,000
최저한세적용대상 특별비용	(105)준비금				
	(106)특별상각, 특례상각				
(107) 특별비용손금산입전소득금액(104+105+106)	07	192,000,000	192,000,000		192,000,000
(108)기부금한도초과액	08	1,000,000	1,000,000		1,000,000
(109)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09	3,000,000	3,000,000		3,000,000
(110)각사업년도소득금액(107+108-109)	10	190,000,000	190,000,000		190,000,000
(111)이월결손금	11	10,000,000	10,000,000		10,000,000
(112)비과세소득	12				
(113)최저한세적용대상비과세소득	13				
(114)최저한세적용대상 익금불산입·손금산입	14				
(115)차감소득금액(110-111-112+113+114)	15	180,000,000	180,000,000		180,000,000
(116)소득공제	16				
(117)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공제	17				
(118)과세표준금액(115+116+117)	18	180,000,000	180,000,000		180,000,000
(119)선박표준이익	24				
(120)과세표준금액(118+119)	25	180,000,000	180,000,000		180,000,000
(121)세율	19	10%	7%		10%
(122)산출세액	20	18,000,000	12,600,000		18,000,000
(123)감면세액	21	9,000,000		3,600,000	5,400,000
(124)세액공제	22				
(125)차감세액(122-123-124)	23	9,000,000			12,600,000

[3]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작성 후 저장

- 「121」란에 최저한세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 5,400,000원 입력
- 「126」란에 중간예납세액 입력
- 「128」란에 원천납부세액 입력

④ 납부 할 세 액 계 산	120. 산출세액(120=119)		18,000,000		
	121. 최저한세 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	17	5,400,000		
	122. 차감할세액	18	12,600,000		
	123. 최저한세 적용제외공제감면세액	19			
	124. 가산세액	20			
	125. 가감계(122-123+124)	21	12,600,000		
	기 납 부 세 액	기 내 납 부 세 액	126. 중간예납세액	22	3,000,000
			127. 수시부과세액	23	
			128. 원천납부세액	24	1,200,000
			129. 간접회사등 외국납부세액	25	
			130. 소계(126+127+128+129)	26	4,200,000
	계 산	131.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132. 합계(130+131)	28	4,200,000	
	133.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29			
134. 차가감납부할세액(125-132+133)	30	8,400,000			
⑤토지등 양도소득, ⑥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 (TAB로 이동)					
⑦ 세 액 계	151. 차감납부할세액계(134+150+166)	46	8,400,000		
	152. 사실과다른회계처리경정세액공제	57			
	153. 분납세액계산범위액 (151-124-133-145-152+131)	47	8,400,000		
	154. 분납할세액	48			
	155. 차감납부세액 (151-152-154)	49	8,400,000		

[1]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당기순이익, 익금산입, 손금산입, 기부금한도관련 조정금액, 이월결손금 입력 후 **☑저장**

[2]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불러오기**
- 최저한세적용대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5,000,000원
 소득공제 30,000,000원(최저한세로 인한 소득공제 배제금액 계산 후 수정)
 - 「116」 소득공제 50,000,000원 입력
 - 「117」 최저한세대상 소득공제 30,000,000원 입력: 50,000,000원 - 20,000,000원(최저한세제외) = 과세표준
 - 「123」 감면세액 3,000,000원 입력
- 최저한세 적용대상 입력 후 → **조정후세액 2,982,103원**

구분	코드	①감면후세액	②최저한세	③조정감	④조정후세액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220,503,230			
소득조정금액	(102)익금산입 02 (103)손금산입 03	13,450,200			
(104) 조정후소득금액 (101+102-103)	04	233,953,430	233,953,430		233,953,430
최저한세적용대상 특별비용	(105)준비금 05 (106)특별상각,특례상각 06				
(107) 특별비용손금산입전소득금액(104+105+106)	07	233,953,430	233,953,430		233,953,430
(108) 기부금한도초과액	08	450,000	450,000		450,000
(109)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09				
(110) 각사업년도소득금액 (107+108-109)	10	234,403,430	234,403,430		234,403,430
(111) 이월결손금	11	15,000,000	15,000,000		15,000,000
(112) 비과세소득	12				
(113) 최저한세적용대상 비과세소득	13				
(114) 최저한세적용대상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14				
(115) 차감소득금액(110-111-112+113+114)	15	219,403,430	219,403,430		219,403,430
(116) 소득공제	16	50,000,000	50,000,000		50,000,000
(117) 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공제	17		30,000,000		
(118) 과세표준금액 (115-116+117)	18	169,403,430	199,403,430		169,403,430
(119) 선박표준이익	24				
(120) 과세표준금액 (118+119)	25	169,403,430	199,403,430		169,403,430
(121) 세율	19	10%	7%		10%
(122) 산출세액	20	16,940,343	13,958,240		16,940,343
(123) 감면세액	21	5,000,000		2,017,897	2,982,103
(124) 세액공제	22				
(125) 차감세액 (122-123-124)	23	11,940,343			13,958,240

[3]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작성 후 **☑저장**
 - 「111」 란에 소득공제 50,000,000원(조정후금액) 입력
 - 「121」 란에 최저한세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 **2,982,103원** 입력
 - 「126」 란에 중간예납세액 입력
 - 「128」 란에 원천납부세액

구분	코드	금액	구분	코드	금액		
① 각사업연도소득계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220,503,230	② 과세표준계산	108.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8+107)	234,403,430	
	소득조정금액	(102)익금산입 02 (103)손금산입 03	13,450,200		109. 이월결손금	07	15,000,000
	104. 차감소득금액 (101+102-103)	04	233,953,430		110. 비과세소득	08	
	105. 기부금한도초과액	05	450,000		111. 소득공제	09	50,000,000
	106.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54			112. 과세표준 (108-109-110-111)	10	169,403,430
	107. 각사업연도소득금액(104+105+106)	06	234,403,430		159. 선박표준이익	55	
	③ 산출세액계산	113. 과세표준 (113+112+159)	56		169,403,430	④ 세액계산	151. 차감납부할 세액 (134+150+166)
114. 세율		11	10%	152. 사실과다른회계처리경정세액공제	57		
115. 산출세액		12	16,940,343	153. 분납세액계산범위액 (151-124+133-145-152+131)	47		8,708,240
116. 지적유보소득 (법제96조)		13		154. 분납할 세액	48		
117. 세율		14		155. 차감납부세액 (151-152-154)	49		8,708,240
118. 산출세액		15					
119. 합계 (115+118)		16	16,940,343				
⑤ 납부세액	120. 산출세액 (120+119)		16,940,343	⑥ 납부세액	121. 최저한세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	17	2,982,103
	121. 최저한세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	17	2,982,103		122. 차감세액	18	13,958,240
	122. 차감세액	18	13,958,240		123. 최저한세적용제외공제감면세액	19	
	123. 최저한세적용제외공제감면세액	19			124. 가산세액	20	
	124. 가산세액	20			125. 가감계 (122-123+124)	21	13,958,240
	125. 가감계 (122-123+124)	21	13,958,240		126. 중간예납세액	22	5,000,000
	126. 중간예납세액	22	5,000,000		127. 수시부과세액	23	
127. 수시부과세액	23		128. 원천납부세액	24	250,000		
128. 원천납부세액	24	250,000	129. 간접회사등외국납부세액	25			
129. 간접회사등외국납부세액	25		130. 소계 (126+127+128+129)	26	5,250,000		
130. 소계 (126+127+128+129)	26	5,250,000	131.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131.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132. 합계 (130+131)	28	5,250,000		
132. 합계 (130+131)	28	5,250,000	133.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29			
133.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29		134. 차감납부할 세액(125-132+133)	30	8,708,240		
134. 차감납부할 세액(125-132+133)	30	8,708,240					
⑦ 토지등양도소득,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 (TAB로 이동)							

실기 따라하기 03

[1]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당기순이익, 익금산입, 손금산입, 기부금한도관련 조정금액, 이월결손금 입력 후 **☑**저장

[2]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 불러오기
- 최저한세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197,400원, 고용증대세액공제액: 7,000,000원
- 최저한세 제외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500,000원
- 중복적용 가능성: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중복적용 가능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중복적용 불가
 - 예외: 이월된 세액공제와 당기분 세액감면은 중복적용 가능
 - 특별 예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당기분 세액감면과도 중복적용 가능
- 최저한세 감면 배제 전략
 - 최저한세로 감면이 배제될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 당기분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
 - 세무 프로그램에서도 세액공제에서 감면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자동 반영됨
- 최저한세 적용대상 입력 후 → **조정후세액 9,891,550원(5,197,400원 + 4,694,150원)**

구분	코드	②감면후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후세액
(101)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이 익	01	312,500,000			
소득조정금액	(102)익 금 산 입	27,850,000			
	(103)손 금 산 입	110,415,000			
(104) 조 정 후 소 득 금 액 (101+102-103)	04	229,935,000	229,935,000		229,935,000
최저한세적용대상 특별비용	(105)준 비 금				
	(106)특별상각, 특례상각				
(107) 특별비용손금산입전소득금액(104+105+106)	07	229,935,000	229,935,000		229,935,000
(108)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8				
(109)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 금 산 입	09				
(110) 각 시 업 년 도 소 득 금 액 (107+108-109)	10	229,935,000	229,935,000		229,935,000
(111) 이 월 결 손 금	11				
(112) 비 과 세 소 득	12				
(113) 최저한세적용대상 비 과 세 소 득	13				
(114) 최저한세적용대상 익금불산입·손금산입	14				
(115) 차가감 소 득 금 액(110-111-112+113+114)	15	229,935,000	229,935,000		229,935,000
(116) 소 득 공 제	16				
(117) 최저한세적용대상 소 득 공 제	17				
(118) 과 세 표 준 금 액(115-116+117)	18	229,935,000	229,935,000		229,935,000
(119) 선 박 표 준 이 익	24				
(120) 과 세 표 준 금 액 (118+119)	25	229,935,000	229,935,000		229,935,000
(121) 세 율	19	20 %	7 %		20 %
(122) 산 출 세 액	20	25,987,000	16,095,450		25,987,000
(123) 감 면 세 액	21	5,197,400			5,197,400
(124) 세 액 공 제	22	7,000,000		2,305,850	4,694,150
(125) 차 감 세 액 (122-123-124)	23	13,789,600			16,095,450

[3]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작성 후 **☑** 저장
 - 「121」 란에 최저한세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 **9,891,550원** 입력
 - 「123」 란에 최저한세적용제외대상공제감면세액 3,500,000원 입력
 - 「128」 란에 원천납부세액 입력
 - 「154」 란에 분납할세액 입력

① 각 사업 연도 소득 계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312,500,000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120. 산출세액 (120+119)		25,987,000	
	소득조정 금	102.익금산입	02		27,850,000	121. 최저한세 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	17	9,891,550
	액	103.손금산입	03		110,415,000	122. 차감 세액	18	16,095,450
	104. 차가감소득금액 (101+102-103)	04	229,935,000		123. 최저한세 적용제외공제감면세액	19	3,500,000	
	105. 기부금한도초과액	05			124. 가산 세액	20		
	106.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125. 가감 합계 (122+123+124)	21	12,595,450	
	107. 각사업연도소득금액(104+105-106)	06	229,935,000		기 납 부 세 액	126. 중간예납세액	22	
② 과 세 표 준 계 산	108.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8+107)		229,935,000	127. 수시부과세액	23			
	109. 이월결손금	07		128. 원천납부세액	24	880,000		
	110. 비과세소득	08		129. 간접회사등 외국납부세액	25			
	111. 소득공제	09		130. 소계(126+127+128+129)	26	880,000		
	112. 과세표준 (108-109-110-111)	10	229,935,000	131.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③ 산 출 세 액 계 산	113. 과세표준 (113+112+159)	56	229,935,000	132. 합 계 (130+131)	28	880,000		
	114. 세율	11	20%	133.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29			
	115. 산출세액	12	25,987,000	134. 차가감납부할세액(125-132+133)	30	11,715,450		
	116. 지적유보소득 (법제96조)	13		⑤토지등 양도소득, ⑥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 (TAB로 이동)				
	117. 세율	14		⑦ 세 액 계 산	151. 차감납부할세액계 (134+150+156)	46	11,715,450	
	118. 산출세액	15			152.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 결정세액공제	57		
	119. 합계 (115+118)	16	25,987,000		153. 분납세액계산범위액 (151-124-133-145-152+131)	47	11,715,450	
			154. 분납할세액		48	1,715,450		
			155. 차감납부세액 (151-152-154)	49	10,000,000			

전자	전자 (중간납부)	분납할 세액 : 1,715,450
----	--------------	--------------------

[4]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3.당기공제및이월액계산]

- “105. 구분”에서 [2]로 세액공제 항목을 조회하여 직접 입력한다.(세액감면은 입력하지 않는다)
- 당기 발생한 세액공제액 “106. 사업연도”에 2026.12.입력, “107,요공제액: 당기분”, “109, 당기공제대상세액:당기분” 3,500,000원 입력
- 전기 발생한 세액공제액 “106. 사업연도”에 2025.12.입력, “108,요공제액: 이월분”, “110, 당기공제대상세액: 1차연도”에 2025년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입력
- “121.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에는 최저한세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입력
 이월분 보다 당기분을 배제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조정감세액 4,694,150원 중 1차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3,500,000원 당기공제 입력, 당기분의 경우 조정감 2,305,850원을 당기분 미공제액으로 입력, 1,194,150원 (4,694,150원-3,500,000원)은 당기공제세액에 입력

1.세액공제(1)		2.세액공제(2)		3.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					
(105)구분	(106)사업연도	요공제액			당기공제대상세액		(121)최저한세적용에따른 미공제액	(123)공제세액 (120-121-122)	(125)이월액 (107+108-123-124)
		(107)당기분	(108)이월분	(109)당기분	(110)1차연도	(120)계			
1	고용증대세액	2026-12	3,5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2,305,850	2,305,850
		2025-12		3,5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소계		3,5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7,000,000	2,305,850	4,694,150
2	연구·인력개발비세액	2026-12	3,5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합계		7,000,000	3,500,000	7,000,000	3,500,000	10,500,000	2,305,850	8,194,150